

부속서 10-다
바레인왕국의 정부조달 양허표

제1절
중앙정부기관

기준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은 다음의 기준가에 따라 이 절에 열거된 기관에 의한 조달에 적용된다.

모든 상품	기준가: 140,000 SDR
모든 서비스	기준가: 140,000 SDR
모든 건설서비스	기준가: 6,000,000 SDR

기관 목록

1. 라시드 승마 및 경마 클럽
2. 체육총국
3. 정보 및 전자정부청
4. 내각업무부
5. 국방부(제1절에 대한 주해1)
6. 교육부
7. 전기수도부
8. 재정 및 국가경제부
9. 외교부(제1절에 대한 주해2)
10. 보건부
11. 주택도시계획부
12. 상공부
13. 공보부(제1절에 대한 주해3)
14. 내무부(제1절에 대한 주해1)

15. 법무, 이슬람 업무 및 기부부
16. 노동부
17. 법제부
18. 지방자치사무 및 농업부
19. 석유환경부
20. 사회개발부
21. 슈라(Shura) 위원회 및 하원 업무부
22. 지속가능개발부
23. 교통통신부(제1절에 대한 주해4)
24. 관광부
25. 건설부
26. 청년부
27. 토지조사등록국
28. 입찰위원회

제1절에 대한 주해

1. 국방부와 내무부

가. 상품: 이 장은 다음의 미국 군급번호(FSC) 범주의 상품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SC 11	핵병기
FSC 18	우주비행체
FSC 19	함선, 소형선, 폰툰(pontoon) 및 부선거
FSC 20	함선 및 해상장비
FSC 2350	케도식 전투, 공격 및 전술용 차량
FSC 51	수공구
FSC 52	측정공구
FSC 60	광섬유 재료, 구성품, 조립품 및 부수품
FSC 8140	탄약 및 핵병기 상자, 포장 및 특수용기

주의: 상품이 이 주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위의 오른쪽 열에 규정된 설명에 따라 결정된다.

나. 서비스: 이 장은 공통분류체계 및 WTO 분류 체계 MTN.GNS/W/120에 기재된 다음 범주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사시스템 및 장비의 설계, 개발, 통합, 시험, 평가, 유지, 보수, 수정, 재건 및 설치

다. 이 장은 다음의 미국 군급번호(FSC) 범주의 상품 조달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FSC 10	무기
FSC 12	사격 통제 장비
FSC 13	탄약 및 폭발물
FSC 14	유도탄
FSC 15	항공기 및 항공기 기체 구성품
FSC 16	항공기 구성품 및 부수품
FSC 17	항공기 발사, 착륙 및 지상취급용 장비
FSC 19	함선, 소형선, 폰툰(pontoon) 및 부선거
FSC 20	함선 및 해상장비
FSC 28	엔진, 터빈 및 구성품
FSC 31	베어링
FSC 58	통신, 탐지 및 방사능 간섭 장비
FSC 59	전기 및 전자장비 구성품
FSC 70	자동자료처리장비, 소프트웨어, 보급품 및 지원 장비
FSC 83	직물류, 괴혁류, 모피류, 의복, 구두, 텐트, 깃발류
FSC 84	의복, 개인장구 및 기장
FSC 87	농업용 보급품
FSC 88	살아 있는 동물
FSC 89	생필품(식료품)

2. 외교부: 이 장은 바레인 영토 밖의 공관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공보부: 이 장은 CPC 84170에 기술된 프로그램된 자료의 취득, 개발이나 제작 또는 방송 시간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교통통신부: 이 장은 민간항공청에 의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절
지방정부기관

바례인 왕국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지 않음.

제3절 그 밖의 기관

기준가

모든 상품	기준가: 200,000 SDR
제5절에 명시된 모든 서비스	기준가: 200,000 SDR
제6절에 명시된 모든 건설서비스	기준가: 7,500,000 SDR

이 장은 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이 양허표에 열거된 기관에 의한 또는 기관을 대신한 조달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은 이 양허표에 열거된 기관에 종속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기관 목록

1. 바레인 전략국제에너지연구센터 (DERASAT)
2. 바레인 폴리테크닉 (Polytechnic)
3. 바레인 관광전시청
4. 대표자회의
5. 경제개발위원회
6. 지방의회
7. 국가감사원
8. 국정자문회의 (Shura Council)
9. 사회보험기관(주해 1)
10. 통신규제청
11. 헌법재판소
12. 바레인대학교

제3절에 대한 주해

사회보험기관: 이 장은 투자를 목적으로 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절

상품

이 장은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일반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과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제5절
건설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음의 서비스는 포함된다.(그 밖의 것은 제외됨)

<u>MTN/W/120</u>	<u>CPC</u>	<u>설명</u>
1.F.n.	6112, 6122, 633, 886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1.F	712	육로 운송 서비스
2.B	7512, 87304	쿠리어 서비스
11.C.a,b	73	항공 운송 서비스
11.C.b, 11.E.b	71235, 7321	육로 우편물 운송
7.A	812, 814	보험 및 연금 서비스
1.B	84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866	경영 컨설팅 서비스*
1.F.d	866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1.A	867	건축,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1.F.a	871	광고 서비스
1.F.o	874	빌딩 청소 서비스
1.D	82201부터 82206까지	자산 관리 서비스**
1.F.r	88442	인쇄, 출판***
6.A	94	폐수 서비스
2.C	7522	사업 네트워크 서비스
2.C.b,c	7523	데이터 및 메시지 전송 서비스

*중재 및 조정 서비스 제외

**정부 소유 시설 관리 제외

***수입 인지, 지폐 및 종교 자료의 인쇄 제외

제6절 건설서비스

1. 이 장은 각 절의 주해, 일반 주해 및 이 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과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건설 서비스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의 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종교를 목적으로 한 건물에 대한 건설서비스(CPC 54129)
 - 나. 비적용대상기관을 대신하여 적용대상기관이 하는 토목공사(CPC 542) 일반 건설서비스

제6절에 대한 주해

1. 이 장은 바레인의 한 정부기관이 바레인의 다른 한 정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취득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장은 비적용대상기관을 대신하여 적용대상기관이 하는 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7절
일반 주해

1.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의 일반 주해는 이 양허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이 장에 예외없이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 규제 지침 발행을 위한 2022년 내각 결의 제30호에서 "파트너십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계약.
 - 나.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은 2022년 내각 결의 제2679-11호에 따라 국내가치(Takamul) 증명서를 보유한 공급자에 대하여 10퍼센트 가격 특혜를 적용할 수 있다.
 - 다. 국방부, 내무부 또는 안보나 군사적 성격의 기관이 수행하는 군사적 성격의 조달
 - 라. 의약품 또는 약품의 조달
 - 마. 조달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달 계약에 부수되는 운송 서비스의 조달
 - 바. 농업 지원 프로그램 및 급식 프로그램(예: 긴급구호를 포함한 식량원조)의 증진을 위한 농산물의 조달
 - 사. 바레인의 한 정부기관이 바레인의 다른 한 정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취득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그리고
 - 아. 비적용대상기관을 대신하여 적용대상기관이 하는 조달

3.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은 2017년 내각 결의 제2416-06호와 2019년 내각 결의 제2516-04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10퍼센트 가격 특혜를 적용할 수 있고 정부 조달 및 입찰 가치의 할당비율에 대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4. 정부가 부속서 10-다의 제1절과 제3절에 열거된 기관에 대하여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경우, 그러한 기관의 조달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장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에 의한 조달의 경우, 이 장은 그 조달의 상품 또는 서비스 요소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8절
정보의 공표

1. 조달예정공고 및 낙찰 후 공고의 공표 그리고 선택입찰 절차의 경우 적격 공급자 명부에 대한 정보의 연간 공표

<http://www.tenderboard.gov.bh>

2. 제1절(중앙정부기관)에 열거된 기관들에 대한 정부조달에 관한 법, 규정, 사법적 결정, 행정판정 및 절차는 다음의 웹사이트에 공표된다.

공식 관보

<http://www.tenderboard.gov.bh>